

# 2025년 초기기업 SW제품 상용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에서는 지역 SW 초기기업의 성장 육성 및 SW융합 산업 활성화  
화를 위해 「2025년 초기기업 SW제품 상용화 지원사업」의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3월 24일(월)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장

##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지역 SW 초기기업의 SW기술 및 제품 스케일업(Scale-up)과 안정적 사업  
성장 기반 조성을 통한 지역 SW산업 활성화
- 사업명 : 2025년 초기기업 SW제품 상용화 지원사업
- 지원기간 : 협약일 ~ 2025. 11. 30.
- 지원규모 : 3개사(3,000만원/1개사)
- 지원대상 : 대구시 내 SW융복합 기술 및 성공가능성이 높은 사업 아이템 보유 기업  
※ 공고일 현재 본사가 대구광역시에 소재
- 지원방법 : 총 사업비의 75% 이내 지원

### <총 사업비 구성>

지원금	기업부담금
총 사업비의 75%이하	- 총사업비의 25%이상 - 현물과 현금으로 구성되며, 기업부담금의 10%이상은 현금으로 구성

### <총 사업비 구성 예시>

구분	총 사업비(100%)	지원금(최대 75%이하)	기업부담금(최소 25%)	
			현물	현금(최소 10%)
예시	40,000,000원	30,000,000원	9,000,000원	1,000,000원

※ 사업규모 및 내용에 맞지 않은 과도한 예산 책정은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부가세는 집행 불가하며, 회계정산 결과 불인정 금액은 환수 조치함

※ 사업비는 과제의 성격에 적합하도록 신청하여야 하며, 평가위원의 판단에 따라 신청금액의 적정성, 예산  
범위 등을 고려하여 최종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확정

○ 지원내용

- (상용화 지원) SW제품 및 서비스 기능개선·고도화, 시제품 제작, 마케팅 홍보물 제작, 지적권 취득, 사업모델(BM) 개선 등에 소요되는 제품의 조기 사업화 유도 지원
- (기업 역량강화) 초기기업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제공
  - ※ 사업 운영(회계) 및 기술 역량강화 컨설팅·교육, SW품질인증 및 컨설팅 지원 등

## 2 신청 자격 및 요건

○ 지원대상 : 아래 해당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공고일 기준 7년 미만의 대구 소재 IT/SW기업
  - ※ 사업 개시일 기준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 공고일 기준 창업 7년 미만 : 2018. 3. 24. ~ 공고일
  -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대구시 SW융복합 기술 및 사업화 성공가능성이 높은 사업 아이템 보유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대표자 이거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및 제2호에 따른 창업기업 대표자
-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에 IT/SW포함 기업
  - ※ 표준산업분류 코드 상 IT/SW관련 분류에 속한 기업

코드	표준산업 소분류(3digit)
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20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31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639	기타 정보 서비스업

○ 지원제외대상

- 최근 3년간 ‘초기기업 SW제품 상용화 지원사업’ 선정기업 중 동일 또는 유사 과제로 신청하는 경우
- 동일 또는 유사과제로 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완료한 경우
  -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을 통해 중복성 사전 검토 후 결과 제출

- 접수 마감일 현재,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및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공고일 현재 진흥원 및 정부로부터 참여제한 조치 중인 업체는 (주관기업(관), 주관기업(관)의장, 참여기업(관), 참여기업(관)의장, 총괄책임자 등) 신청 불가
    -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제재정보 검색에서 확인가능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에 해당하는 경우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기업
  - 결과보고서 제출,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관리기관에 접수 마감일 기준 채무(임차료, 관리비 등)가 있는 경우

-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 신청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 의무 및 역할

- 선정자는 관리지침, 협약서 등의 사항을 준수하며,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함
- 선정자는 대구광역시와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대응자금(현금)을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이 정한 기한 내에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현물 투입이 있는 경우 해당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해야 함
- 선정기업이 법인인 경우 사업 운영과 사업비 관리 책임은 법인에 있으며, 사업비의 유용, 횡령, 편취 등 부적정 사용에 대한 사업비 환수 시 모든 책임은 선정기업(대표자)에게 있고, 지침 및 기준 등에 따라 제재 및 채권추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3 신청 및 접수 방법

- 공고기간 : 2025. 3. 24.(월) ~ 2025. 4. 8.(화)
- 제출기간 : 2025. 4. 7.(월) ~ 2025. 4. 8.(화) 16:00까지
- 제출방법 : 이메일 접수 후 증빙서류 제출(방문/우편)
  - ※ 접수시간 초과 시 접수가 불가하므로 시간 엄수 요망
  - ※ 이메일 접수 및 증빙서류 제출 모두 완료해야만 최종 접수 처리된 것으로 판단함
  - ※ 방문/우편접수 시 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되며, 우편배송 지연 등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기업에 있음
  - ※ 이메일 접수 후, 전화통화로 접수 여부 확인 필수(사업담당자에게 수신확인 必)
  -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공고기간 종료 후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이 불가
- 제출서류

구 분	내 용	제 출 부 수
사업계획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원본 1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한글/PDF)	각 1부 (이메일로 제출)
붙임	1 신청/참여제한대상 여부 확인 · 약속서	원본 1부
	2 현금출자(납입) 약속서	원본 1부
	3 참여인력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원본 1부
	현금 · 현물 부담약약서	원본 1부
	4 참여인력 증빙서류 · 4대보험 가입자명부(인력보유현황 확인) ※공고일 이후 발급분 · `24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또는 급여내역서(인건비 산출내역 확인) · 신규채용에 따른 4대 보험 미가입시 채용계약서, 급여이체확인증 등 객관적 증빙자료 제출	원본 1부
5 NTIS 유사과제 검색결과	원본 1부	

구분	내 용		제출 부수
	6	NTIS 제재정보 검색결과	원본 1부
	7	최근 3년간 주요개발실적	원본 1부
별첨	1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공고일 이후 발급분 [법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2	최근 3년간(`22, `23, `24년도) 재무제표 ※ 국세청 발급 서류, 회계사 공증 서류만 인정 ※ 재무제표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증명원 제출 가능 ※ 단, 24년 재무제표가 발행전일 경우 기결산재무제표 제출(추후 재무제표 제출)	원본 1부
	3	국세 및 지방세 납입 증명서	원본 1부
	4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원본 1부
	5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2024년 12월, 2025년 2월 기준 각 1부	원본 각 1부
	6	최근 3년간 정부과제 수행 관련 협약서 ※ 붙임7에 주요개발실적을 작성한 경우, 과제별 협약서 각 1부 제출	사본 각 1부
	7	수출신고필증 ※ 2024년 수출 건 해당 ※ 수출 건이 없을 경우, 미제출	사본 1부
	8	연구개발 인력현황표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급서류 ※ 미보유기업의 경우, 관련분야 전공자 및 관련분야 경력 확인 가능 서류 대체 가능	원본 1부
	9	(선택1) 인증 및 시험성적서 (선택2) 특허출원증, 등록증 등 지식재산권 인증 서류 ※ 선정평가 시, 우대사항(가점)에 해당하는 서류	사본 1부

※ 진흥원 홈페이지(www.dip.or.kr) 공지사항-해당사업공고-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제출

※ 중철/트윈링 등 제본하지 않고 집계 사용하여 제출

※ 별첨 5, 6, 7, 8은 선정평가 시, 객관지표 평가항목에 해당하는 서류

※ 모든 서류는 이메일 제출 후 방문/우편으로 원본 제출

※ 이메일 제출 시, PDF 파일을 사업계획서, 붙임, 별첨으로 폴더 정리 후 각 상기 표에 명시된 순으로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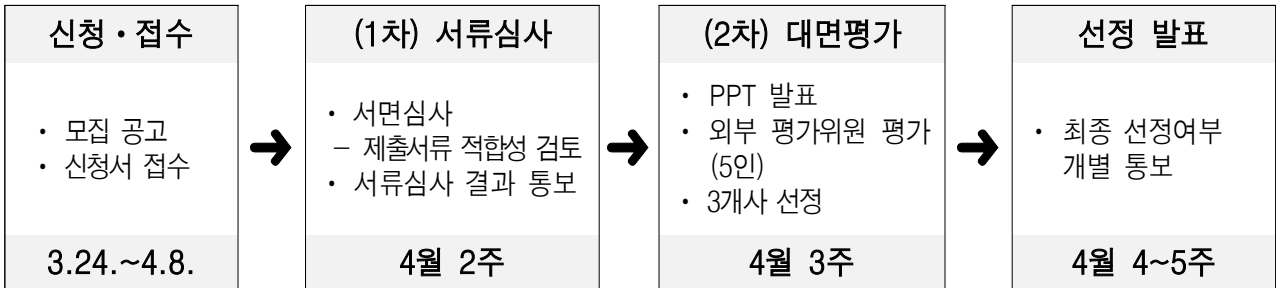
○ 제 출 처: 대구 수성구 알파시티1로 170, SW융합기술지원센터 5층 507호

○ 문 의 처: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SW산업팀 문희조 전임

053-655-5628, mhj520@dip.or.kr

## 4 추진 절차 및 방법

### 선정절차



※ 상기일정 및 세부내용은 향후 변동 가능하며 서류심사 결과 통보 이후 발표자료 제출 요청. 자세한 평가일정 및 방법 등은 향후 안내 예정

### 평가방법

#### ○ (1단계) 서면평가

- 평가항목 : 지원자격, 과제 중복성 여부, 회계점검, 우대사항(붙임1) 서류 검토
- 평가기준

구분	검토내용	제출서류
과제 중복성	과제 중복성 여부	NTIS 결과, 최근 3년간 지원사업 수행이력
	참여제한 여부(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NTIS 검토결과
	기타 규정 또는 공고내용 위반 여부	확약서 등
회계점검	사전검토기준(붙임1)	재무제표 등

※ 제출서류 적합성 검토(서류점검) 후 ‘적정’ 시 2단계 심사 진행

#### ○ (2단계) 발표평가

- 평가항목 : 사업추진체계, 사업내용의 타당성, 기대효과, 자체 평가지표 등
- 평가기준
  - 평가위원별 산술평균 후 평점 60점 이상 고득점 순으로 과제 선정
  - 선정과제의 결격사유 또는 협약포기 등의 사유 발생 시, 차순위 과제를 최종 선정할 수 있음
  - 과제수행 총괄책임자가 PT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과제 수행 참여인력으로 대체 가능

구분	공통지표			자체평가지표(MBO)		가점	합계
	사업추진체계	사업내용의 타당성	기대효과	공통성과지표	자율지표		
배점	30	40	10	10	10	5	105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		
공통 지표	사업추진 체계	조직 및 운영체계	추진 조직 역량 및 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안기업의 추진의지 및 역량</li> <li>총괄책임자의 전문성 및 역량</li> <li>조직 및 운영체계 전문성</li> </ul>	10	30	
			사업추진 수행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안기업의 전담인력 확보</li> <li>전담인력의 역할분담 적절성</li> <li>사업추진 인프라 확보</li> <li>주관기업의 재무건전성</li> </ul>	10		
			기업 성장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매출액, 고용유지, 수출액, 정부과제 및 자체기술개발 수행(최근 3년) 등 <b>(객관지표점수표(붙임2) 기준)</b></li> </ul>	10		
	사업 내용의 타당성	사업목표	사업목표의 명확성	사업목표의 적절성(사업비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기획의 충실성</li> <li>사업목표의 적절성(사업비전 등)</li> <li>사업 최종목표와 단계별 목표의 적절성</li> <li>사업 목표수립 근거의 합리성</li> </ul>	10	40
				사업내용	사업내용 및 추진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 추진 단계별 추진 가능성</li> <li>사업내용의 적절성 및 구체성</li> <li>사업내용 근거자료의 합리성</li> <li>사업추진 일정 및 산출물의 타당성</li> </ul>	
		사업기술	사업내용의 기술성	제안기업의 보유 기술 전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안기업의 보유 기술 전문성</li> <li>- 핵심기술 보유여부</li> <li>- 기술개발 상용화 및 사업화 실적</li> <li>기존 기술 및 사업과의 차별성</li> <li>- 대체 가능성 및 유사서비스와의 차별성</li> <li>상용화 가능성</li> <li>- 기술개발 상용화 및 사업화 계획</li> <li>- 개발 결과물의 상용화 시기 및 시장 진입 가능성</li> </ul>	15	
				사업비	사업비 구성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비 계상의 적절성</li> <li>산출근거의 구체성</li> <li>민간현금 확보 노력</li> </ul>	
	기대효과	지역산업 활성화	지역산업 공헌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산업 활성화 노력 및 실적</li> <li>- 지원기업 생산성 향상, 기술성과 향상도</li> <li>- 고용 창출 계획 적정성</li> <li>- 사회적 비용 절감 및 지역산업 공헌도</li> </ul>	10	10	
	자체평가지표 (MBO)	공통성과지표	성과지표의 달성가능성	성과지표의 달성가능성	10	20	
		자율지표	성과지표의 우수성 및 달성가능성	성과지표의 우수성 및 달성가능성	10		
우대사항(가점)		우대(가점) 사항		5	5		
합 계					105		

※ 상기 내용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자체평가지표(MBO)는 사업계획서 내 명시되어 있음

○ 사업운영 계획

구 분	추진내용
모집(공고) 및 선정 (`25. 4.)	- 공고 및 평가 후 지원과제 선정
↓ 협약 및 지원금 지급 (`25. 4.)	- 협약체결 및 1차 지원금 지급
↓ 사업수행 (`25. 5. ~ 11.)	- SW제품 및 기 기술개발 업그레이드 등
↓ 중간평가 (`25. 8., 예정)	- 과제진도 점검 및 2차 지원금 지급 ※ 평가결과 ‘수행중단’ 시 지원금 환수 및 제재 조치
↓ 과제종료 (`25. 11. 30.)	- 과제종료 및 결과물 제출
↓ 결과평가 (`25. 12., 예정)	- 최종평가 및 성과관리 ※ 평가결과 ‘실패’ 시 지원금 환수 및 제재 조치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세부 일정은 향후 공지 예정

## 참고 1 서류 작성 안내 및 유의사항

### □ 관련규정 및 참고자료

-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 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중 [별표1] 비·세목별 사업비 산정기준
-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지원사업 관리지침
- 기타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에서 정하는 관련 규칙, 지침 및 기준 등

### □ 유의사항

#### ○ 공통

-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관련 법령 및 규정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수행 기업의 책임임
- 협약 지원금은 1차(협약일 이후), 2차(중간평가 이후)로 나누어 지급함
  - ※ 1차 지원금: 협약 지원금의 60% / 2차 지원금: 협약 지원금의 40%
- 이행보증보험증권 및 회계정산수수료 비용 등은 기업에서 부담해야 하며, 협약체결 및 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 이후 사업비 지급 예정
  - ※ 선정기업은 기업부담금(현금) 전액을 1차 지원금 지급 전 입금하여야 함
  - ※ 보증금액은 협약 지원금의 100% 보험기간은 ‘사업시작일 ~ 사업종료일 + (최소)150일 까지’ 로 함
- 제출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할 수 있음
- 관리기관은 과제 진행상황 수시점검에 따라 수행기업에게 시정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을 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수행기업은 추진내용, 진척상황 및 결과물에 대한 서면·대면보고, 발표의 의무가 있으며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지원금을 협약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수행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약, 과제의 불성실수행 평가결과 등의 사유가 발생할 시, 귀책정도에 따른 지원금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수행기업은 본 사업의 지원 선정방식 및 이와 관련된 관리기관의 공정한 평가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제반결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함
- 사업기간 종료 후 보조금 미집행 금액, 불인정 판정금액, 이자발생액 등은 전액 반납하여야 함
-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수정공고를 추진함

○ 신청 및 접수

- 제출된 서류는 신청기업의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이 불가하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다만 서류 검토에 따라 미비한 점에 대해 추가적인 요청이 있을 수 있음
- 신청자(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및 과제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검토 및 평가

- 신청기업의 참여제한에 대한 사전검토 및 관리기관의 내부지침에 따른 평가를 통해 지원대상 기업을 선정할 수 있으며, 적격기업이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평가 결과에 따라 수정사업계획서를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기 제출된 신청서 및 계획서 내용, 계약(협약)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그 내용을 신속히 보고하고 관리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사업비 집행관리를 위해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전용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동계정과 연동된 전용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이는 과제 총괄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집행되어야 함

〈 필수 이행사항 〉

- 본 사업은 제품 상용화(매출화)에 중점을 두는 사업으로, 사업기간 내 완제품을 개발해야함
- 역량강화 세미나 및 인증, 전문가 컨설팅 등 진흥원에서 추진하는 프로그램 의무 추진
- 주간보고 및 진도점검 결과보고서 등 정기 제출 필요

○ 결과보고

- 과제완료 후 수행기업은 결과보고서 및 성과(실적)과 관련한 자료 일체를 관리기관이 요청하는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함
-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참여제한 및 지원금 환수 등의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사업계획서 작성 안내

- 과제수행에 투입되는 자원(참여인력, 사업비 등)은 과제목표 및 수행내용에 적합하게 편성하여야 하며, 특히 사업비는 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중 [별표1] 비·세목별 사업비 산정 기준을 적용하여 계상
- 신청기업은 반드시 공고에 명시된 서류 일체를 준비하여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는 기업 및 개발과제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하여 작성하고, 기업의 특장점, 사업성, 기술력에 대한 우수성 위주의 작성을 권고함
- 과제별 정량적·정성적 목표, 결과물, 시제품을 명확히 정의해야 하며, 중간평가 성과 저조 시,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 개발결과물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및 상용화 방안(계획)을 명확히 작성하여야 함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이 아닐 시, “원본대조필” 을 필히 날인하여야 함
- 총괄책임자는 최소 30% 이상 참여하여야 함(참여율 기준)

<b>붙임1</b>	<b>서면평가 사전검토기준 및 우대사항(가점)</b>
------------	-------------------------------

〈서면평가 사전검토기준〉

구분	사전지원제외
검토 기준	1. 주관기관(업), 참여기관(업), 주관기관(업)의 장, 참여기관(업)의 장, 총괄책임자, 세부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관련법 및 관련 규정에 의해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2.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업), 주관기관(업)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업), 참여기관(업)의 장이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기업의 부도 나.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다.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기업 3. 기타 접수마감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관리기관장이 지원사업 참여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기관, 총괄책임자, 세부책임자의 경우 가. 관리기관에서 시행한 지원사업에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참여하여 결과보고서 미제출, 정산금 및 환수금 미납, 기술료 미납이 있는 경우 나. 관리기관에 접수일 기준 채무(임차료, 관리비 등)가 있는 경우 다. 기타 지원사업의 특성상 관리기관의 장이 사업참여제한 사유를 명시하여 공고한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우대(가점) 사항〉

검토내용	배점		
기술 및 품질 인증(붙임3 참고)	5건 이상 (2)	~3건이상 (1)	3건미만 (0)
지식재산권(최근 3년)	5건 이상 (2)	~3건이상 (1)	3건미만 (0)
수성알파시티 입주기업 (*제출일 사업자등록증 주소 기준)	입주기업 (1)		그외 (0)

<b>붙임2</b>	<b>객관지표</b>
------------	-------------

구분		평가항목	배점		
<b>객관지표</b>	기업규모 및 신용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대비 최근년도 매출액 증가 : 최근년도 재무제표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 등 매출확인 : 증빙가능한 최근 3년간 실적으로 산출하되, 3년 이내의 초기창업기업의 경우 증빙 가능한 연평균 증가율로 산정</li> </ul>	증가 (2)	유지 (1)	감소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제 제출일 기준, 직전년도 대비 근로자 수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4대보험가입자명부(제출일자 기준)</li> </ul>	100%초과 (2)	~90%이상 (1)	90%미만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과제 및 자체기술개발 수행(최근 3년간) : 정부과제 수행(지원금 1억원 이상, 동일과제 내용 제외)</li> </ul>	5건 이상 (2)	3건 이상 (1)	3건 미만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전년도 수출 건수</li> </ul>	2건 이상 (2)	1건 이상 (1)	1건 미만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전년도 연구개발인력 비율(연구개발인력/총사자수)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연구개발 인력현황표* 확인 (*연구개발 인력현황표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급서류, 미보유기업의 경우 관련분야 전공자 및 관련분야 경력 확인 가능서류 대체 가능)</li> </ul>	30%이상 (2)	10%이상 ~30%미만 (1)	10%미만 (0)

<b>붙임3</b>	<b>SW인증기준</b>
------------	---------------

SW프로세스 인증

No.	종류	인증내용	No.	종류	인증내용
1	SP	SW프로세스 인증	3	CMMI	SW프로세스 인증
2	TMMi	SW테스트 프로세스 인증	4	SPICE	SW프로세스 인증

SW제품 인증 및 기타인증

No.	종류	인증내용	No.	종류	인증내용
1	GS	SW제품 인증	15	EPC	성능인증제품마크
2	웹 접근성 품질마크	웹 사이트 접근성 인증	16	모바일접근성	장애인접근성준수
3	ICT융합 품질인증	ICT융합 기술/제품인증	17	KTL마크	ISO25023기준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4	IOS9001	품질경영시스템에 대한 인증	18	TTA마크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인증
5	정보보호 제품성능 평가	정보보호 제품성능 평가	19	A-SPICE	차량용 SW개발 프로세스 인증
6	ISMS-P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인증	20	EMV Level2	스마트카드 결제단말기 응용어플리케이션 인증
7	CC	보안적합성 인증	21	POS	POS단말기 보안기능 시험
8	ISO/IEC27001	정보보안경영시스템	22	GA	개방형 앱세서리 시험인증
9	ISO/IEC25000	SW품질 관련 국제표준 *KOLAS마크 포함	23	TL9000	정보통신품질경영
10	KC인증	국가통합인증마크	24	IMS	중소기업 정보화 경영체제 인증
11	CE인증	EU 통합규격인증마크	25	PMS	기업경영시스템 역량수준인증
12	FCC인증	미국연방통신위원회인증	26	InnoBiz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인증
13	NEP	신제품인증	27	MainBiz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인증
14	NET	신기술인증	X	X	X

※ 기타인증은 IT관련 서비스인증(품질경영, 관리체계, 정보보호 등)으로 제한